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-1037호

용역 전자입찰 공고

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가. 용 역 명: 2026~2027년 분당구 제설장비 임차용역(1구역)

나. 용역기간: 2026. 11. 15. ~ 2027. 3. 15.

다. 용역현장: 성남시 분당구 관내 도로(1구역)

라. 용역조건: **『과업지시서』 참고**

마. 임차장비 및 수량: **덤프트럭(15톤) 17대, 덤프트럭(5톤) 4대, 트럭(1톤) 4대, 굴삭기(0.8㎥) 3대, 염수살수차(16톤) 1대** ※과업지시서 참고

바. **기초금액: 금1,247,000,000원**(추정가격: 금1,133,636,364원, 부가가치세: 금113,363,636원)

사. 공고기간: 2026. 10. 22.(목) ~ 10. 30.(금)

2. 입찰 및 계약방법

가. 본 용역은 **총액입찰, 전자입찰, 일반경쟁,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** 대상입니다.

나.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.

<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: 조달청 콜센터 1588-0800 >

-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 한 후 지문을 등록
-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

다. **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, 과업내역서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**

라. 본 입찰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」를 적용합니다.

3. 입찰 참가자격

가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3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

나. 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의하여 **일반건설기계대여업** 또는 **개별건설기계대여업** 등록을 필하고 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**덤프트럭(15톤) 17대, 덤프트럭(5톤) 4대, 트럭(1톤) 4대, 굴삭기(0.8㎥) 3대, 염수살수차(16톤) 1대 이상을 보유 또는 임차계약 체결이 가능**하며 운전원 인력 확보가 가능한 업체로서

○ **제설용역에 필요한 장비 보유증명서류(보유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)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필히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○ 본 용역은 재해발생시(강설시 및 폭설예보시) 신속한 출동 및 현장조치를 위하여 **덤프운전원, 트럭운전원, 굴삭기운전원, 염수살수차운전원은 30분 이내에 지정한 장소에 집결**하여야 하며, **제설기간 동안 덤프트럭(15톤, 5톤, 1톤)에 염화칼슘 살포기를 탑재하고, 덤프트럭(15톤)에는 차량의 앞쪽에 제설기 플레이트판(브라켓) 설치를 완료한 후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배치**하여야 합니다.

○ **과업지시서(용역조건) 및 설계내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라며, 그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**

다. 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」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을 등록하여야 합니다.

라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5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입찰자는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9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(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)

※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.

4. 현장설명 일시 및 장소 : 생략

5. 입찰보증금

가.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.

나. 국고귀속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.

6. 입찰서 제출

가. 제출기간: 2026. 10. 28.(수) 10:00 ~ 10. 30.(금) 10:00

※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.

나.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,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 '전자문서함-보낸문서함'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.

7.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

가. 입찰집행(개찰)일시 : 2026. 10. 30.(금) 11:00

※ 개찰장소: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

나.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-3%～+3%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,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, 예정가격이하로서 **낙찰하한율(77.995%)**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**종합평점이 90점 이상**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.

다.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**「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」<별표 1-6>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"추정가격 10억원 이상"** 에 의합니다.

○ **이행실적**

- **해당용역 기준금액: 1,133,636,364원(추정가격, 부가세 제외한 금액기준)**
- **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(창업기업, 소기업·소상공인은 7년)인 제설장비 임차용역** 실적을 적용
- 실적증명서는 관련협회 및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 (실적증명서 발급 시 이행기간을 반드시 명시)

※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유사용역은 평가하지 않으며, 실적인정여부는 사업부서(분당구 건설과 031-729-7361)에서 결정합니다.

○ **경영상태**

-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또는 재무제표에 따라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,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.
- **신용평가등급**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,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.
- **재무제표**에 의한 평가 시 '기준비율'은 최근년도 관련협회에서 발행한 '기업경영분석' 자료를 적용하며, 관련 협회의 '기업경영분석'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발행자료를 적용합니다.

기준비율 적용 업종	자기자본비율	유동비율
N76. 임대업(부동산 제외)	38.27%	63.01%

다.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종합평점이 통과 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,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'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'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라.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**7일 이내**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마.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.

바.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 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고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업체 별도 통보 안함)

사.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의합니다.

8. 입찰의 무효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9조, 「같은법 시행규칙」 제42조,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(행정안전부 예규)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.

9.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준수

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성남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
10. 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준수

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「성남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」를 준수하여야 하며, 최종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**「임금 지불 서약서(별지 제3호서식)」를 제출**하여야 합니다. 건설기계 임대 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11.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

가.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「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·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,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.

《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(법 제4조, 제9조)》

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· 예산 ·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
③ 중앙행정기관 ·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
④ 안전 ·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

-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**"안전보건수준 평가표"**를 준용하여 **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** 후 착공(착수)시 발주기관(감독관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**"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"**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,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,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(감독관 등)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.

나. 발주기관(감독관)

- 계약상대자(수급인)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하여 "안전보건수준 평가표" 기준에 따라 사업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 등 작성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검토하고,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(수급인)와 함께 보완·개선하여야 한다. 또한 사업 진행시 계약상대자(수급인)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따라 안전·보건 의무이행 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고, 준공시 이행 여부에 대하여 **"안전보건수준 평가표"**를 작성 평가하여야 한다.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

12. 기타사항

가.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, 입찰유의서, 용역계약 일반조건, 용역계약 특수조건, 과업지시서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,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**필요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고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.**

나.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(☎1588-0800)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다. **계약체결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**에 하여야 하며,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,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
라. 계약상대자는 **대금청구 시 청구금액(부가가치세 제외)의 1.5%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를 매입하여야 합니다.**

마. 또한, 대금청구 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81조의4, 「국민연금법」 제95조의2 및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4에 따라 **4대 사회보험(건강·연금·고용·산재) 납부(완납)증명서**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바.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,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리팀(☎031-729-7052), 감사관(☎031-729-2661) 및 홈페이지(www.seongnam.go.kr → 민원참여 〉 민원/제안/신고 〉 공익신고)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.

사. 보충정보 제공처 및 참고사항

-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: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(☎ 031-729-7052)
- 용역내용 관련: 분당구 건설과 도로관리팀(☎ 031-729-7361)
- 전자입찰 이용안내: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(☎1588-0800)
- 관련 행정안전부예규: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『법령정보-훈령/예규』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10. 22.

성남시 분당구 재무관

[붙임 1]

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「 계약명 」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)

: 아니오 ()

(업체명)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,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주 소:

업체명:

대표자: (인)

[붙임 2]

안전보건수준 평가표(예시)

□ 사업명: 000공사, 000용역, 000위탁 등

〔작성자: 착수시(계약상대자), 준공시(발주부서)〕

평가항목	수급인 평가기준 (도급인: 발주자, 수급인: 계약상대자)	(착수시) 수립여부 (O,X,해당없음)	(준공시) 이행여부 (O,X,해당없음)
□ 안전보건 관리체제			
1. 일반원칙	안전보건방침 수립(안전관리규정, 지침, 매뉴얼 등) 여부 ※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	O, X, 해당없음	O, X, 해당없음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	〃	〃
2. 이행계획	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여부	〃	〃
3. 역할 및 책임	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※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·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	〃	〃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	〃	〃
□ 실행수준			
4. 위험성평가	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(https://kras.kosha.or.kr) 활용하여 도급사업(사업장 등)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·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(발주자)과 수급인(계약상대자)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	O, X, 해당없음	O, X, 해당없음
5. 안전점검	안전점검 및 모니터링(보호구 착용확인 등) 확인 여부	〃	〃
6. 이행확인	안전조치(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) 이행 여부	〃	〃
7. 교육 및 기록	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(5년) 여부 ※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	〃	〃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	〃	〃
8. 안전작업허가 (필요시)	유해·위험작업(밀폐공간, 맨홀 등)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(발주자) 후 허가 여부	〃	〃
□ 운영관리			
9. 연락체계	비상연락망 구축(도급인, 수급인, 관계기관 등)	O, X, 해당없음	O, X, 해당없음
10. 위험물질 및 설비 (필요시)	유해·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·기구·설비의 안전성 확인	〃	〃
11. 비상대책	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(고용부, 소방서, 병원 포함)	〃	〃
12. 안전관리비용 (필요시)	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※ 「중대재해처벌법」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·용역·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	〃	〃
	시민재해(「중대재해처벌법」 제2조 제4호, 제6호, 같은법 시행령 제3조 (공중이용시설)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대상 여부		

20 년 월 일

작성자(착수시 계약상대자) 직책: 성명: (인)

평가자(준공시 감독자) 직책: 성명: (인)